

# 2018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 시설관리공단 · 보조금 지원단체(4) ]

- 인천종합어시장 협동조합 · 문화원 · 체육회 ·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

인천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

# 2018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 I

### 감사실시 개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이행실태 및 연간 보조금 5천만원 이상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보조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하여 보조금을 예산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감사 대상 및 기간 등

- 기 간 : 2018. 10. 22 ~ 2018. 12. 31
  - 대 상 : 5개 기관(단체)
  - 감사범위 : 2015. 1월 ~ 2018. 10월
  - 감 사 반 : 감사팀장 外 4명
- ☞ 감사 대상별 세부내역

수감기관명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범위
시 설 관 리 공 단	종합감사	2018.11.19 ~ 11.23	2017.10 ~ 2018.10
인천종합어시장협동조합	특정감사	2018.10.22 ~ 10.26	2015. 1 ~ 2017.12
문 화 원	특정감사	2018.10.29 ~ 11. 2	2015. 1 ~ 2017.12
체 육 회	특정감사	2018.12.17 ~ 12.21	2015. 1 ~ 2017.12
바 르 게 살 기	특정감사	2018.12.24 ~ 12.31	2015. 1 ~ 2017.12

#### □ 중점 감사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공단 자체규정의 준수 여부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 보조금 자금운영 및 집행 실태, 보조사업 조건 준수 등
  - 보조사업 완료 실적, 정산검사 등 관리 실태

## II

## 감사 결과

### 1. 총 평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및 중구문화원 등 연간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하는 행위, 형식적인 재물조사 등 관행적 업무처리가 일부 확인되었고, 자체 인사규정 등 공단의 제규정 개정이 미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 후 대행사업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는 관련 조례 및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 정산 등의 절차를 대부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와 같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와 실제 사업내용이 상이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검토 없이 정산검사를 종료하는 등 정산 검사가 보조금 집행금액 확인에만 그치고 있어 보조사업 수행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조사업이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공익 사업을 위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함.

● 이번 감사결과 3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6건, 주의 25건, 재정상 조치로는 77천원 회수, 285천원 추징, 22천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나 지침 등에 대한 업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2. 처분내역 총괄

구 분 기 관 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건)					신분상 (명/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환급	지급	
계	31	6	25	-	384/4	285/1	77/2	-	22/1	-
시설관리공단	16	5	11	-	99/3	-	77/2	-	22/1	-
인천종합어시장협동조합	2	-	2	-	-	-	-	-	-	-
문화원	4	1	3	-	285/1	285/1	-	-	-	-
체육회	6	-	6	-	-	-	-	-	-	-
바르게살기	3	-	3	-	-	-	-	-	-	-

## 3. 지적 사항

### 지적사항 목록

연번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원)
1	셔틀버스 운행 용역관리 소홀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2	재물조사 실시 결과 보고 미이행 등 물품관리 부적정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3	징계관련 인사규정 미개정 및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등	시 설 관 리 공 단		시정 주의	
4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5	인사 사전예고제 미시행 등 인사업무 처리 소홀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6	중도퇴사자 복지포인트 정산 및 복지항목 설계 부적정	시 설 관 리 공 단		시정	회수 (69,160원)
7	감사결과 공개 처리 부적정 등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연번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원)
9	계약관련 채권자 영수처리 소홀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10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소홀	시 설 관 리 공 단		시정	회수 (8,190원)
11	특근매식비 집행절차 부적정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12	소방계획서 작성 소홀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13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리 소홀	시 설 관 리 공 단		시정	
14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 감면 확인 소홀	시 설 관 리 공 단		주의	
15	한중문화관 시설대관료 산출 부적정	시 설 관 리 공 단		시정	지급 (22,000원)
16	인건비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징구	어 시 장 협 동 조 합		주의	
17	경품구입비 지출 정산 부적정	어 시 장 협 동 조 합		주의	
18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련 서류 작성·제출 소홀	문 화 원		주의	
19	지역개발채권 징구 소홀	문 화 원		시정	징구 (285,000원)
2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업무 소홀	문 화 원		주의	
21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문 화 원		주의	
22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비 집행 부적정	체 육 회		주의	
23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홍 보 체 육 진 흥 실		주의	
24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정산 검사 소홀	체 육 회 홍 보 체 육 진 흥 실		주의	

연번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원)
25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소홀	체 육 회		주의	
26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자료 작성제출 소홀	체 육 회		주의	
27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체 육 회		주의	
28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총 무 과		주의	
29	자부담금 집행 부적정	바르게살기운동회 중구협의회		주의	
30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작성 소홀	바르게살기운동회 중구협의회		주의	

## ●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요약]

### 가 시설관리공단

#### 1. 셔틀버스 운행 용역관리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중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운전원의 인적사항(재직증명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용한 운전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수탁자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로 1급 정비사나 공인공업사에 위탁 차량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탁자인 \*\*\*관광(주)에서 「중구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 계약」의 조건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월 용역(기성)감독조서에 과업지시서대로 용역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감독자 확인란에 날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계약대로 이행되는지에 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재물조사 실시 결과 보고 미이행 등 물품관리 부적정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중구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40조(정기재물조사)에 따라 공단은 모든 물품에 대해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종합 심사·조정하여 2월 말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이에 공단에서는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장부상 재고와 현품 대조 조사를 실시한 후 현품이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 초과품 및 부족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등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물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실-912, 2018.2.22.)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기로 현물조사만 실시하였을 뿐 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물품의 정확한 상태와 활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물조사 실시 결과 보고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 징계관련 인사규정 미개정 및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등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주의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요구 등) 제5항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및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 징계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사규정을 개정(2018.4.30.) 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제규정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내규 제6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에서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내규 제2조(징계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한 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지 않고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징계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해 「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내규」 별표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수사기관 처분에 따른 비위사건 처리내규」 별표3(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함.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따라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만을 통보함에 따라 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비위사실로 인한 사항은 통보되지 않을 수 있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진신고기간 운영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어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 4.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중구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8.4.26. 고충신청서 접수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6.21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 실시하여 조사기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위원회 참석비는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을 추가(1일 1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 기타 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 제출 및 정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위원회에 소요된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회의록 등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1일 1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위원을 제척하고 임시위원으로 대체하면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한 사실이 있음.

## 5. 인사 사전예고제 미시행 등 인사업무 처리 소홀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단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53조(직원의 면책)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이 퇴직 시 재직기간 중의 과실여부를 조회한 후 이사장 및 소속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총3회 승진·전보, 26회 퇴직 등 인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예고와 의원면직 제한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

## 6. 중도퇴사자 복지포인트 정산 및 복지항목 설계 부적정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69,160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에서는 복지점수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퇴직/해임/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도퇴사자의 퇴직일이 1일자이므로 월할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을 포함하여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정산함으로써 총 1건 (69,160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기본항목) 및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2018.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는 의무적으로 설계·운영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계·운영되는 자율항목이 있고, 기본항목에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이 포함됨.

- 시설관리공단은 2018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을 설계하면서 자율항목 포인트로만 배정하고, 기본항목인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전체 적용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생명·상해보장보험의 포인트를 설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7. 감사결과 공개 처리 부적정 등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와 공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자체감사 통합매뉴얼(2018, 감사원) 270쪽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는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하나, 공개문을 작성할 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회사, 법인, 단체명은 익명처리 등 변경하여 공개하여야 함.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7년 구 감사결과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면서 신용카드 집행내역에 (주)\*\*투어, \*\*\*코리아 등 업체명을 비실명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하는 등 감사결과 공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항목별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시 항목 중 감사결과는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에 따르면 수시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7년 구 기획감사실 자체감사 결과(2017.11.17.시행, 2017.12.14. 결과 통보)를 결과 통보일 이후 4개월이 지난 2018.4.16. 공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의하면, 사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업무추진비로 외부인사 명절 선물비 2건, 529,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공단 임직원 체육행사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참석시켜 오찬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9. 계약관련 채권자 영수처리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에 의하면,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6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련 지출업무 시 지출결의서에 채권자의 영수인을 날인하거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 10.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소홀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8,19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6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연체료의 징수)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건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사용 전에 미리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또한 연체료 8,190원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

### 〈행정재산 사용허가 업무 소홀 내역〉

연번	시설물	계약자	납부금액	부과기간	납부일자	연체료	연체일수
1	연안부두 해양광장(1층)	현대****(주) 김**	8,429,630	2018.10.21.~ 2019.10.20	2018.10.22	5,030	2
		현대****(주) 김**	8,429,630		2018.10.21	2,510	1
2	생활사 전시관 의류점	이**	2,205,500	2018.03.30.~ 2019.03.29	2018.03.30	650	1

## 11. 특근매식비 집행절차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V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비목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 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8년 3월과 4월분 특근매식비 지출 시 2개월분 특근매식비를 합산하여 지출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12. 소방계획서 작성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문화회관 소방계획서의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건축물 관리현황, 용도별 관리현황 일부가 누락되어 소방계획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3.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리 소홀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출입문 앞 점형블럭 미설치 등 5건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4.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 감면 확인 소홀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며, 감면 사유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해 감면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나,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기간 중 총 3건에 대해 “장애 및 경차 유형”으로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 감면하면서 증빙 자료가 없이 감면 처리하여 민원 발생 및 변칙 운영 우려가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5. 한중문화회관 시설대관료 산출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지급(22,000원)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한중문화관의 시설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해야하며, 별표1에 의한 규정을 보면 오전·오후·야간타임으로 사용료 금액을 구분하며,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 시설대관료를 176,000원 징구(토, 일, 공휴일 가산금 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하였으나, 사용일(2018.10.11.)은 목요일로서 토, 일, 공휴일 가산금 20%를 미적용하여야하나 대관사용료 가산금 20%를 가산 적용하여 징구한 사실이 있음.

## 나 인천종합어시장 협동조합

### 16. 인건비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징구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각종 수당(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 징수해야 함.

-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에서는 2017년 연안부두 축제 행사 진행을 위한 의전도우미 1명(박\*\*)에 대해 인건비 400,000원을 지출하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7. 경품구입비 지출 정산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제출한 연안부두 축제 실행 계획(안)의 행사 경품 구입예산(600,000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면서도 그 지출내역에 대한 품목명 및 수량 등 증빙자료 없이 정산서류에 카드 구입 전표만 첨부하여 총 2,0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다 중구 문화원

### 18.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련 서류 작성 · 제출 소홀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또한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 문화원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을 하면서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사용서약서,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9. 지역개발채권 징구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징구(285,000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경우 대금청구 금액의 2/100를 채권 매입하여야 함.

- 문화원은 사무실 이전 집기류 구입 등 2건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공채) 285,000원 매입징구를 소홀히 함.

## 2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업무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화원은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지 않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 〈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현황 〉

(단위 : 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품목	계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16-01-21	물품운송대	2,900,000	2,636,363	263,637	**익스프레스

## 21.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신용(체크)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 후 매출표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문화원은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매출전표(영수증)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라 중구 체육회

### 22.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비 집행 부적정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중구 체육회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중구 체육회는 제27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2016.5.26.) 등 총 6건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실이 있음.

### 23.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사항에 의하면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해야 하고,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서 교부해야 하나,

-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해 할 자부담금의 예치(금액 및 시기)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자부담금 예치 현황〉

(단위 : 원)

대회명	예산액 (보조금+자부담금)	보조금	자부담금	자부담금 예치 여부	비고
제18회 중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외 15개	152,810,000	82,440,000	70,370,000	부적정	
제6회 중구청장배 줄넘기대회 16개	151,572,000	85,307,000	66,265,000	부적정	
제26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외 15개	151,090,000	88,700,000	62,446,000	부적정	

### 24.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정산 검사 소홀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교부신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의 개요, 수행계획서,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실적보고) 및 제28조(정산검사)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 중구체육회에서는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사업계획서 상의 대회기간 및 정산보고서 상의 대회기간이 실제 대회운영 기간과 다르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보조사업 수행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현황〉**

(단위 : 일)

대회명	사업계획서 상 대회기간	정산보고서 상 대회기간	실제 대회기간	비 고
제26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2	2	3	
제14회 중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1	1	2	
제27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2	2	3	
제15회 중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1	1	3	
제28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2	2	3	
제16회 중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2	2	3	

**25. 지방보조금 회계 처리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계처리의 근본적인 원칙은 지출을 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지출결의서 작성 요령에 의하면 지출결의서 내역 작성 시에는(물품 구입의 경우)해당 품목명 및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중구체육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추진계획서 및 종합보고서 상의 물품 구입 내역과 지출결의서 상의 물품 내역이 상이 함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당초 추진계획서 상의 물품구입 내역을 종합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관련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보조금 회계 처리 현황〉**

(단위 : 원)

대회명	추진계획서 및 종합보고서	증빙자료	비 고
제2회 중구청장배 보디빌딩대회	트로피 개인 1위(19개*60,000원) 트로피 개인 2위(19개*60,000원) 트로피 개인 3위(19개*50,000원)	트로피 소(57개*41,000원) 트로피 중( 2개*86,500원) 메달 (120(19개*6,000원)	

**26.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자료 작성 · 제출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또한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 중구체육회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총 49건에 대해 교부신청서 규정 양식 미사용,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미제출, 청렴이행 서약서 미제출 등 관련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계	2015년	2016년	2017년
49건	16건	17건	16건

**27.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신용(체크)

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 후 매출표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중구체육회에서는 2015년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외 16개 대회, 2016년도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외 17개 대회, 2017년도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외 16개 대회에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매출표(영수증)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마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 28.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사항에 의하면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서 교부해야 하나,

- 총무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예치(금액 및 시기) 확인을 위해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지 않아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 29. 자부담금 집행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용도의 사용으로 판단하고 있음.

-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에서는 2017년 저탄소녹색생활화실천 캠페인 등 6개 행사에 대해 행사일과 관련이 없는 날에도 자부담금 집행을 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0.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작성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절감노력을 위하여 “반복·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에서는 저탄소녹색생활화실천 캠페인 사업 수행 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000개, 3,000개의 홍보물품(물티슈)을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하고, 홍보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매년 단순 반복적인 1회성 행사용 홍보물품 등을 과다 구입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시 단가 적용 소홀, 증빙자료 미흡 등 실적보고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Ⅲ

###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해당기관(부서) 통보
  - 시정·회수 등 : 60일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

붙임 수감기관별 처분요구서 각 1부. 끝.